솔루션 이용 계약서

본 솔루션 이용 계약은 2025년 5월 12일(이하 "본 계약 체결일")에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.

- AWSUnicorn 주식회사 (이하 "<u>유니콘</u>")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니콘로 101 대표이사 홍 길 동
- 제이커브 주식회사(이하 "<u>이용자</u>")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니콘로 102 대표이사 김 창 업

(이하 AWSUnicorn과 이용자를 "당사자들", 각각을 "당사자"라 함)

다 음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유니콘이 이용자에게 클라우드관리 솔루션 클잘알(이하 "본건 솔루션")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본건 솔루션을 사용 및 수익(이하 총칭하여 "<u>구독</u>")함에 있어서, 각 당자사의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.

제2조 (솔루션의 내용)

- ① 본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본건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.
 - 1. 올인원 클라우드관리 솔루션 클잘알
 - 2. 클잘알을 기초로 이용자를 위해 개발된 맞춤형 커스텀 기능

② 유니콘은 본건 솔루션이 계약기간 동안 원활히 제공되며, 고도의 보안성을 갖출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지속적으로 그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제3조 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[1]년(이하 "계약기간")으로 한다.
-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의 변경 요청 또는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(이하 "구독갱신")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 (제한과 책임 등)

-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. 단, 유티콘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.
 - 1. 본 계약 또는 관련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솔루션의 복사본을 만들거나, 본건 솔루션에 기반하여 변경, 번역, 또는 파생물을 생성하는 행위
 - 2. 본건 솔루션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제공하는 행위
 - 3. 유니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솔루션을 재배포, 공개, 대여, 리스, 재판 매하는 행위
 - 4. 본건 솔루션의 상표 또는 유니콘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나타내는 기타 표시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
- ② 이용자는 본건 솔루션에 관한 이용약관과 당시 유효한 개인정보처리방침(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며, 이하 총칭하여 "<u>정책</u>")을 포함한 모든 유니콘의 공개된 정책 및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본건 솔루션을 사용한다.
- ③ 유니콘은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위한 본건 솔루션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명확히하면, 해당 개발기간 동안에도 구독료는 제6조에 따라 발생한다.

제5조 (권리 및 사용의 범위)

① 본건 솔루션의 소유권 및 본건 솔루션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(저작권, 특허, 상표, 실용신안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함) 등 일체의 권 리는 유니콘에게 있고 이용자는 본 계약상의 이용허락에 따라 본건 솔루션을 계약기간동안 비독점적, 재실시불가능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라이선 스")를 부여받는다. 라이선스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유니콘과 이용자간 합의에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유니콘에게 귀속된다.
 - 1. 본건 솔루션, 본건 솔루션과 관련되어 유니콘이 개발 및 제공한 소프트웨어, 응용프로그램, 이에 대한 모든 개선, 강화 또는 수정된 사항
 - 2. 본건 솔루션과 관련한 발명 또는 개발기술
 - 3. 제1호, 제2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
- ③ 유니콘은 본 계약의 종료 시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객 정보 등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 (구독료의 지급)

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구독제품을 구독하는 것에 대한 구독료(이하 "<u>구독료</u>")로 아래와 같이 유니콘에게 지급한다.

기간	지급금액(원)	지급기일	지급방법
연 구독료	연 9,000,000 (VAT 별도)	계약체결일(첫 1년 구독 이 종료된 날짜) 또는 구독갱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	유니콘이 제공하는 은행계좌에 지급

제7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본 계약에서 "영업비밀"이란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,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기술적·영업적 정보 및 자료(개인정보 포함), 노하우 (know-how) 등을 포함하며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 다만, 당사자 일방의 본 계약의 위반 행위 없이 공중에 공개된 정보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,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비밀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각 당사자는 전항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 자에게 공개·훼손·변경·위조 또는 유출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(이하 "**영업**

비밀 침해행위")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③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추가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,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. 단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영업비밀 공개 전에 영업비밀을 제공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.
 - 1. 영업비밀을 제공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.
 - 2.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. 다만 상대방 당사자와 사전 협의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.
 - 3. 법률 및 정부기관 등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.
 - 4. 법률상 요구되는 납세 신고, 등록, 인허가,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.
- ⑤ 본 조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8조 (유지보수 및 보증)

- ① 유니콘은 이용자의 본건 솔루션 사용 시 오류와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. 계약기간 내 구독료를 지급하여 구독이 유효한 경우, 유니콘은 본건 솔루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업데이트, 업그레이드, 일상지원, 긴급 장애처리,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무상 제공한다. 명확히하면, 솔루션 버전 업데이트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범위 및 일정은 유니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.
- ② 본건 솔루션은 유니콘이나 기간통신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해 예정된 유지보수 및 예기치 않은 응급 유지보수 또는 유니콘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.

제9조 (면책 및 손해배상)

- ① 본 계약의 위반 등의 사유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위반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유니콘과 유니콘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
 - 1. 이용자의 본건 솔루션 사용 중 유니콘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한 오류 또

는 중단, 데이터 손실이나 부정확성, 손상으로 인한 손해.

- 2. 이용자의 간접적, 예시적, 부차적, 결과적 손해 또는 특별 손해.
- 3. 유니콘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.

제10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
 - 2.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·가처분·경매 기타 강제집행·체납처분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되지 않거나 부도처분(거래정지 처분)을 받은 경우
 - 4.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, 파산절차, 회생절차,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가 있는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5.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 이 어려운 경우
 - 6. 상대방 당사자가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유출, 공개하거나 기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7.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 훼손 등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본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당사자 일방의 손해배상 등 권리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.

제11조 (양도금지)

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.

제12조 (분쟁해결)

- ① 본 계약 내용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관행에 따라 상호간에협의·결정한다.
-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만약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소송으로 해결한다.

[이하 날인을 위한 여백]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계약체결 일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.

2025. 2. 18.

유니콘

AWSUnicorn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니콘로 101 대표이사 홍 길 동 (인)

이용자

제이커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니콘로 102 대표이사 김 창 업 (인)